

1. 정부조직법

- ①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 ②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 ③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 ④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3. 국가공무원법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4. 경찰법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5. 경찰공무원법

<p>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p>	<p>제4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6조(임용권자) ① <u>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안전처 소속 치안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u></p>	<p>제6조(임용권자) ① <u>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u></p>

<p>한다.</p> <p>② <u>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 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u></p> <p>③ <u>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② <u>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u></p> <p>③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p>
<p>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p>	<p>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p>
<p>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u>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u></p>	<p>제20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u>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p>
<p>제24조(정년) ④ <u>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24조(정년) ④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p>

<p>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층 심사위원회를 둔다.</p>	
<p>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u>경찰청장이 한다.</u>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u>경정 이상의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u></p> <p>1. <u>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u></p> <p>2. <u>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u></p> <p>3. <u>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u></p>	<p>제27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u>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u>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u></p>

6. 경찰공무원임용령 - 국민안전처는 해양경찰청으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변경

<p>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② 국민안전처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며, 경찰청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p>	<p>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p>
--	---

7.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변경

8. 경찰공무원 징계령 -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변경

<p>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u>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경찰청,</u></p>	<p>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u>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u></p>
--	--

공병인 경찰학개론 개정법률(2017. 8. 1)

<p>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u>해양경비안전교육원</u>,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u>해양경비안전서</u>, 정비창(整備廠), 경비합정 및 <u>경찰청장</u>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p>	<p>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u>해양경찰교육원</u>,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u>해양경찰서</u>, <u>해양경찰정비창</u>, 경비합정 및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u>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p>
--	---

9. 경찰관직무집행법 - 국민안전처는 해양경찰청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는 해양경찰서로 변경

1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민안전처는 해양경찰청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는 해양경찰서로 변경

1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p>제70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簿綴)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u>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70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簿綴)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5년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부철은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p>
---	--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현행법은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납부업무수행에 있어 혼선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시 해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생계 곤란에 대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여, 과태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14. 경범죄처벌법 -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

<p>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u>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u>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8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u>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u>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	---

15. 통합방위법 - 국민안전처는 해양경찰청으로,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변경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

<p>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u>국민안전처장관</u>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p>	<p>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u>행정안전부장관</u>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p>
<p>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u>국민안전처</u>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u>국민안전처장관</u>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 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u>행정안전부</u>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u>행정안전부장관</u>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17. 도로교통법 -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변경